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폐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612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폐지	2
※ 참고자료	
1.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문체부훈령)	11
2.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문체부훈령)	13
3.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14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12. 17.

다. 회부연월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폐지

가. 개정안 요지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② (생략)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u> ④ (생략)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u> <u>③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u> <u>1.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u> <u>2.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u> <u>3. 정기간행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인</u> <u>4.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u> <u>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u>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u>	<u><삭 제></u>

현행	개정안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7조¹⁾는 문화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동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개요]

구 분	내 용
구 성	구성인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 위원: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 1.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3. 정기간행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인 4.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 위원의 임기: 3년(연임 가능)
기 능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 시 자문, 기타 정기간행물 발전에 관한 업무 자문
현 황	2023년 1월 제2기 위원회 임기 만료 후 2025년 1월 현재까지 미구성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되지 않음)

○ 개정안은 2022년 9월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체부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필요한 경우 문체부 정책자문위원회²⁾ 산하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참고로, 2022년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비상설 협의체로 대체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확정³⁾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2)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자문기구로서,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함.

3) 2022년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① 1년 이상 구성되지 않은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 연평균 본회의 개최 실적이 1회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⁴⁾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개정안에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법」 개정이 포함되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 위원회 중 문체부 소관 위원회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위원회가 선정되었고, 이 중 기정비된 2개 위원회(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음.

[제22대 국회 문체부 소관 위원회 정비 정부입법 현황]

연번	위원회명	소속	위원장 (임기)	위원수 (공무원 제외)	정비방안
1	국가도서관위원회	대통령	윤희운 (‘24.4~’26.4)	15명	소속 변경 (대통령→부처)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대통령	미구성	-	소속변경 (대통령→총리)
3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부처	문체부장관	14명	정부협의체 전환
4	뉴스통신등록취소심의위원회	부처	문체부1차관	7명	비상설화
5	공공디자인위원회	부처	미구성	-	비상설화
6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부처	미구성	-	비상설화
7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부처	미구성	-	비상설화
8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9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10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11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부처	미구성	-	폐지

③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았거나 2인 이하인 위원회, ④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치목적·기능·심의대상이 유사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였음.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022.9.30. 발의, 의안번호 제2117676호

-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행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동법 제14조는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기간행물 자문위원회를 폐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앞에서 설명한 2022년 정부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5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우리 위원회 법안 심사 시 비록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에 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지만, 이스포츠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등에 대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 축소로 비추어질 우려에 대한 지적,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 등에 따라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동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
-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마련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문체부훈령)은 위원의 해촉 및 회의 방식 등에 관한 조문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문체부훈령)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위원의 필수 구성 대상을 규정⁶⁾함에 따라 위원 구성의 전문성 및 회의 진행의 투명성을

5)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3.3.21.) 참조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③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담보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 해촉·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위원의 제척·회피·위원회 회의·회의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고 있는데에 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규정하고 있음⁷⁾.

○ 또한, 최근 동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문체부가 2023년 1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임기 만료 후 현재까지 동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위원회 정비 계획’이 발표된 2022년 이전에는 2019년 4회, 2020년 6회, 2021년 3회 개최되어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간 정기간행물 진흥계획 추진사항 점검, 신규 사업 발굴,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제언·자문 기능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3. 정기간행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인
4.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
7) 동 검토보고서 11~13p. 참고자료 참조

[연도별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연도	주요내용(실적)
2019년	○ 자문회의(4회) -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계획 추진사항 점검, 신규사업 발굴 논의 등
2020년	○ 자문회의(6회) - 신규사업 발굴 논의,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등
2021년	○ 자문회의(3회) - 우수잡지 선정기준 및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논의 등
2022년	○ 자문회의(2회) - 잡지산업 발전 방안 등
2023년	2023년 1월 위원회 임기 만료 후 미구성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유지·활용하는 방안과 동 위원회의 기능을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위원의 전문성, 정책의 안정성,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문체부의 보완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8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정기간행물법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
2. 정기간행물법 제9조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 진흥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으며,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정기간행물 단체가 추천하는 3인,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기간행물법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건 및 보고사항

2. 주요 회의내용

3. 결정 요지

4. 표결 수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심의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그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전략,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③ 《삭제》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②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는 운영간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간사는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참고 3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심사경과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 에 관한 법률안 (2117676)	정부 (2022. 9.30.)	○ 문체부 소관 행정위원회 15개 정비(정기간행물 자문위원회 포함)	(상임위) • 상정('22.12.16.) • 소위('23.03.21.) • 임기만료폐기	• 각 위원회별 회의횟수, 실적, 유사·중복 사항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필요